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6.(금) 배포 시 배포 2026. 11. 6.(금) 17:30

농식품부,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 ❶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 ❷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범위 확대, ❸농지·경영체·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6일(금)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12.17.)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업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에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해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 내에 이미용, 세탁, 생필품 판매, 약국 등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배후마을의 빈집을 매입해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첨단농업과 K-푸드+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생산·공급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험 감지, 안전 정지 등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육종포장,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한다. 기후부와 협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하여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여 실경작자의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돼지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 열처리 공정도 마련한다.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연구용으로만 개방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연구시설(BL3)을 민간 기업의 백신제조용까지 확대 개방하고, △4개의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K-푸드 수출 지원사업을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재배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도 당초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경우에는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기준,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합리화한다.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양성화를 돕는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 사육자 등을 위해 동물 이송비를 지원하여 동물병원, 단체 등을 통해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 및 인·허가 등 신청이 필요한 79개 서비스의 450종 제출 서류 중 절반 이상을 전면 정비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 또는 통합하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 확인을 통해 제출을 면제,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는 분량을 축소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농지대장 작성·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을 위해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농지임대차 변경 시 1번만 변경신청하면 경영체-직불금까지 원스톱으로 변경 처리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출하연기 조치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재조사를 실시해 출하연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미 (044-201-136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유정은 (044-201-13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1.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영농형태양광 사업 포함

▸ **(현행)** 「영농형태양광법」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내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영농 자재 생산 및 공급 사업 등에 한정(「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 **(개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 신설, '27.6월)

▸ **(기대효과)**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유도하고 **농업법인의 신규 소득원 창출 기대**

□ 영농형 태양광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후부 협업

▸ **(현행)**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개선)** **발전사업 면적이 2만m^2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6.12월)

▸ **(기대효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태양광 확산 기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시설 내 수익시설 등 허용

▸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내에서는 **상업행위가 불가**하여 생활SOC복합시설 內 **수익시설 불가**

▸ **(개선)** 기존시설 內 식품, 이미용, 생필품, 세탁, 약국, 우정 등 **생활서비스 제공시설을 허용**하고, 배후마을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리모델링** 허용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 개정, '26.12월)

▸ **(기대효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 공급** 및 **시설 활성화**

2.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고도화

▸ **(현행)** 장애물·경계 인식 및 회피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개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 확보 기준 마련 필요**

▸ **(개선)** **무인 자율주행** 중 **위험 감지·안전 정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모드 안전기준 신설**(「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26.11월)

* (경보) 활성·비활성 전환 시, (안전정지) 감독자 미감지·장애물 감지·경로 이탈 시

▸ **(기대효과)** 자율주행 장치의 오작동 및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수직농장 형태의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 개선

▸ **(현행)**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에 **철제하우스**와 **육종포장만 규정**

▸ **(개선)**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에 **수직농장 형태를 추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27.7월)

▸ **(기대효과)** 새로운 형태의 종자업 등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권으로 운영 관리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세부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 완료('24.10.10.) 기준에 준하여 개정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농식품 부산물 추가 기후부 협업

▸ **(현행)** **농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 평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필요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건 규제특례 부여 중('25~)

▸ **(개선)** 농축산물 생산·유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11.12. 시행 예정)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이 가능**

▸ **(기대효과)** 기업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면제 등 **개발비용 절감** 및 **진입장벽 완화**, 폐기되는 농식품 부산물의 **원료화·업사이클링 촉진**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

□ 관행적 농지 위반의 한시적 정비 허용

▸ **(현행)** 교환경작·가족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나 오래전 설치한 **농업용 시설**도 「농지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원상회복 등 조치 대상**
* 개인 농지는 고령·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 가능하고, 무단 전용 시설은 사후 허가 근거가 없어 원상회복 외에 위법상태 해소 수단 부재

▸ **(개선)** 기준일('26.10.31.)까지 발생한 위법은 **법 유효기간**(3년) 동안 **처분을 중지**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사후 전용허가, 지목 정비**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26.10월)
- 다만, 투기 목적 취득과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에서 제외하여 농지법에 따라 조치

▸ **(기대효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켜 **농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규제 합리화 추진 기후부 협업

▸ **(현행)**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제**로 **축산물 공급 기반 축소 우려**
* 국토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돼지(96.1%), 산란계(94.4%)는 기존 농가의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위치

▸ **(개선)** ①사육**규모의 증가 없는** 산란계 등 축사 **증개축 허용**, ②과도한 **가축사육 제한 거리기준의 합리화** 법제화 등(「가축분뇨법」등 관련 법령 개정, '27년)

▸ **(기대효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통한 **축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

□ 돼지혈액 유래사료(혈장단백)의 과학적 열처리 표준공정 제도화

▸ **(현행)** 현행 혈장단백 사료공정 '**열처리 기준**'만으로 **ASF 바이러스 차단에 한계**

▸ **(개선)**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열처리 온도 및 건조 조건 추가 등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공정 기준 마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6월)

▸ **(기대효과)** 혈장단백을 통한 ASF 등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강화**

□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특수제조시설 민간개방 확대

▸ **(현행)** 특수연구시설(BL3) 공동활용규정(고시)이 **연구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기업 백신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제조용 시설로의 사용 근거가 부족**한 상황

> ※ **생물안전 3등급시설(BL3) : 급**기 및 배기 공조를달리하여 100% 외부공기를 공급해야 하며, 고압증기멸균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매우 높음**

▸ **(개선)**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개방 목적**을 기존 연구용에서 **제조용까지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고시」 개정, '26.12월)

* (기존) 연구시설 5개실 → (확대) 연구·제조시설 7개실

▸ **(기대효과)**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술의 실용화 및 수출을 지원해 수 조원 규모의 **글로벌 백신시장 선점*** 가능

* 현재 조에티스, 베링거 등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공공 시설 활용 방식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백신 개발에 착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와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

□ 복수의 유사 지원사업 통합으로 수출기업 편의·혜택 제고

▸ **(현행)** 유사한 K-푸드 수출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각 **사업별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 부담 증가 및 사업 효율 저하**

*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지원,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상품개발,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 **(개선)** 유사 사업을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통합**('26.12월)

▸ **(기대효과)** 신청 시 각 사업별 중복유사 **서류 구비 부담을 해소**하여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재해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농작물 준보험 도입

▸ **(현행) 보험화된 78개 품목**('26년 기준) **외**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발생 시 사후적 재해대책만 적용 가능하여 **재해보장 사각지대** 존재

▸ **(개선) 보험 미운영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수준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택형 재해지원제도 도입**(「농어업재해 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7.6월). 시범사업 추진('27.下))

▸ **(기대효과)** 보험 외 품목 재배 농가의 **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 농가 경영 안전성 제고**

□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 **(현행)** 분구(分區)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요건이 엄격하게 되어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 발생

▸ **(개선)** 시·구의 분리·설치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지는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26.11월)

▸ **(기대효과)** 행정구역 변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불이익 발생 차단**

□ 가축전염병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상향

▸ **(현행)** 방역조치에 따라 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은 가축평가액의 전액이나,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고 있음

▸ **(개선)**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에 지급되는 **최소 보상금**을 당초 **가축 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27.4월)

▸ **(기대효과)** 가축처분 농가의 생활 안정 및 입식 자금의 현실적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결혼패널티 해소

▸ **(현행)** 배우자가 이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신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체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다만 결혼 이전에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도 각자 지원금 수혜 가능

▸ **(개선)**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영농**(개별 경영주 등록 및 유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가능**(「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6.12월)

 * 이행점검 시 증빙제출(판매·납품 실적, 보험가입 실적 등) 등을 통해 독립영농 여부를 확인

▸ **(기대효과) 부부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을 촉진**하고, 독립영농을 영위하는 청년농의 정책 수혜 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의 독립영농 기준 합리화

▸ **(현행)** 전업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자의 **독립영농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제한**

- 사업자 등록 및 학업 이수를 원칙적 금지하고 일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자) 본인 생산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을 위한 사업자등록, (학업) 단기·야간 과정

▸ **(개선)**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완화(「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6.12월)

- 예방적·일률적 금지 방식에서 유연한 기준 적용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 방식으로 전환

* (사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백만원 미만 시 모두 허용, (학업) 장·단기, 주야간 불문 월 60시간까지 허용

▸ **(기대효과)** **유연한 허용**과 **사후 점검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청년창업농이 가능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속 성장**하는 제도 기반 마련

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 **(현행)** 수의사는 관련 법령(수의사법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나, **보호자에게 진료부의 열람 또는 발급 의무는 없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분쟁 해결 곤란

▸ **(개선)** 동물소유자등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요청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를 부여(「수의사법」 개정, '27.6월)

▸ **(기대효과)** 반려인의 **알권리 제고** 및 **동물의료 투명성 확대**

□ 기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 부여

▸ **(현행)**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을 위해 농지 위반사항 해소 등 양성화가 필요하나, 보호동물 존재 및 **부지 확보 등 문제로 단시일 내 이행 곤란**

▸ **(개선)** **기설치**('26.4.27 이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동물보호법」 개정, '26.10월)

* (요건) 시설·운영기준 준수 및 농지복구계획서 제출·복구비용 예치 등

▸ **(기대효과)** 기존 부지 내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 양성화 이행 기회 제공을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신고제 정착 기여**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 **(현행)** **양육자**가 중성화를 위해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 시행

▸ **(개선)** **고령 양육자 등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자 외 **동물병원·단체** 등에서 이송을 하고, 동물 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지침 개정(「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지침」 개정, '26.12월)

▸ **(기대효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체계 강화로 **개체수 조절** 및 **유기·유실동물 예방**

5. 민생규제 합리화

□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를 통한 서류 간소화

▸ **(현행) 창업기업은 인력과 행정역량 부족**으로 인·허가 및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행정서류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부내 인·허가 및 정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 면제**토록 하고, **서식 통폐합, 사업계획서 분량완화** 등을 통해 **행정서류 간소화**(「축산법 시행규칙」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개정, '27.6월)

* **79개 서비스 450종의 제출서류 중 229종의 서류 정비(50.9%)**

❶ **(관행적 서류 최소화) 사업 신청·심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이나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대상자 선정 이후 단계에 제출 또는 폐지**(66종)

❷ **(행정기관 발급서류 면제)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제출 폐지**(129종)

❸ (**분량·양식 합리화**) 사업계획서 등 작성 분량이 많은 서류는 **작성 분량 상한 설정** 및 **양식 표준화**(34종)

▸ **(기대효과) 창업기업**의 서류 준비에 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 「농지-경영체-직불」 등록·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 **(현행)** 농지·경작정보 관련 **행정관리 및 직불금 지급 업무**는 목적과 법적근거가 달라 **2개 기관**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분산 수행**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농업인**이 **각각 방문·신청(3회)**해야 하는 **불편 발생**

- **(농지대장) 지방정부**(시·구·읍·면)**에서** 모든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필지별 소유자.임차인, 농지면적 등 정보)을 **의무적으로 작성, 변동사항 발생시 소유자·임차인이 변경 신청**
- **(경영체 등록)** 농지대장이 등재된 경우 원하는 **농업인의 신청**(연중)**을 받아 농관원에서 경영체등록시스템**(농업 e지)**에 등록**
- (**직불금 지급**)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신청**(2~4월 신청, 5~9월 변경)을 받아 **지방정부**(읍·면·동)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개선)** 시스템 연계 및 기관 간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농지임대차 변경시 농업인은 한번만 변경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농지, 경영체, 직불 관련 법령 개정, '27.6월)

* 모든 건에 대해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증이 수반되는 신규등록은 현행 방식 유지 불가피

▸ **(기대효과)**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농지** 관련 **3개 행정업무**를 **각각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3회→1회)**

□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여 **출하연기*** **조치**된 경우, **출하가능일 종료 직전**(1회)에만 **재조사**를 실시하여 출하가능 여부를 재확인

* 출하연기: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식약처 고시)」(이하 '생산단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잔류농약이 분해·소실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기간까지 출하를 연기하는 조치

▸ **(개선)** **일정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하연기 기간 중에도 재조사를 실시**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무 매뉴얼」 반영(旣 완료)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농관원 예규)」 개정('27.1월))

* 「농약관리법」상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품목·농약성분이고, 출하연기기간이 3개월 이상

▸ **(기대효과)** 출하연기 기간 중 재조사 결과 농약 잔류량이 잔류기준 이하로 분해·소실된 경우 **출하연기 기간 단축**을 통해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